

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「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

2025. 11. 19.

성 남 시 장

1. 공람기간: 2025. 11. 19. ~ 2025. 12. 3.(14일간)
2. 공람장소: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(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, 동관 6층)
3. 공람내용: 특별정비예정구역별 특별정비계획(안)
(특별정비계획서, 관련도면, 부속서류 등)
 - 가. 특별정비예정구역 31구역(샛별마을) 특별정비계획(안)
 - 나. 특별정비예정구역 S4구역(분당동5) 특별정비계획(안)
 - 다. 특별정비예정구역 23구역(시범단지2) 특별정비계획(안)
 - 라. 특별정비예정구역 S6구역(장안타운4) 특별정비계획(안)
 - 마. 특별정비예정구역 6구역(목련마을1) 특별정비계획(안)
 - 바. 특별정비예정구역 S3구역(목련마을5) 특별정비계획(안)
4. 공람도서: 게재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)
5. 의견제출: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제출방법: 방문접수 또는 전자메일 (FAX 제출 불가)

- 1) 방문장소: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(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, 동관 6층)
- 2) 전자메일: 특별정비예정구역별 구분하여 제출바라며, 메일제목은 “[구역번호] 특별정비계획 수립 주민공람 의견서” 로 제출요망
(예시) [31구역] 특별정비계획 수립 주민공람 의견서
가) (31구역, S4구역) pyr5737@korea.kr
나) (6구역, S3구역) leehs01@korea.kr
다) (23구역, S6구역) rjs322@korea.kr

6. 기타사항

- 가. 공람내용은 주민의견, 관련부서(기관) 협의, 시의회 의견청취, 경관심의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나. 특별정비예정구역 31구역·S4구역, 23구역·S6구역, 6구역·S3구역은 결합조건이며 구역 지정 완료 후 결합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.
- 다.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시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팀(031-729-3706~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